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훈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941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6.

발 의 자: 강훈식·김병기·김남근

강준현 • 천준호 • 김교흥

김승원 • 박상혁 • 윤준병

김한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·매도하는 방식으로 단기매매차익을 얻을 경우 해당법인이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. 또한 증권선물위원회가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, 해당 법인은 통보반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.

그러나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은 그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나 사업보고서를 통해 알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, 금융당국 차원의 제재는 없어 단기매매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의무화하고,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며, 공시의무 위반 시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상

장법인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(안 제172조제1 항 등)

법률 제 호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청구할 수 있다"를 "청구하여 야 한다"로 한다.

제446조에 제3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0의2. 제17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관한 적용례) 제172조제1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 게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2조(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	제172조(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
반환)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	반환) ①
(「상법」 제401조의2제1항 각	
호의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	
장에서 같다), 직원(직무상 제1	
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	
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	
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. 이하	
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주요주	
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(이	
하 "특정증권등"이라 한다)을	
매수(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되	
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지위를	
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	
도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	
같다)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	
(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	
로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	
되는 특정증권등의 매수를 포	
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	
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	
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	

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(이하 "단기매매차익"이라 한다)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・반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1. ~ 4. (생 략)
- ② ~ ⑦ (생 략)

제446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30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31. ~ 63. (생략)

<u>청구하여야 한다</u>
<u>.</u>
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제446조(벌칙)
1. ~ 30. (현행과 같음)
30의2. 제172조제3항을 위반하
여 공시하지 아니한 자
31. ~ 63. (현행과 같음)